

## 김포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

### 1. 심사경과

- 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04년 12월 7일 김포시장  
나. 회부일자 : 2004년 12월 10일  
다. 상정일자 : 2004년 12월 13일  
라. 의결일자 : 2004년 12월 14일

### 2. 제안설명의 요지

#### 가. 제안이유

- 광주광역시에서 신청한 감면조례 개정허가안에 대해 행정자치부에서 수용하기로 함에 따른 법률명칭 변경(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⇒ 5·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)으로 관련조항이 개정되었고
- 국가유공자·5·18민주화운동부상자·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 반복되는 어휘로 조문에 혼란이 있어 간결화 하고자 함.
- 현행 장애인의 배우자는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 자동차세를 면제 하였으나 배우자도 장애인과 같이 주민등록이 등재 되어 있는 경우에만 면제하도록 관련 조항을 개정.

#### 나. 주요골자

-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을 5·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로, 명칭 변경
- 국가유공자·5·18민주화운동부상자·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을 국가유공자 등으로 개정(안 제2조)
- 장애인의 배우자도 장애인과 같이 주민등록이 등재 되어 있는 경우에만

자동차세를 면제할 수 있도록 개정(안 제4조)

### 3. 전문위원 검토의견 요지

- 광주광역시에서 신청한 감면조례 개정허가안에 대해 행정자치부에서 수용하기로 함에 따라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의 명칭이 5·18민주유공자 예우에관한법률로 개정되어 법률 개정내용을 우리시 조례에 반영하고
- “국가유공자·5·18민주화운동부상자·고엽제후유의증환자”로 반복되는 어휘로 인해 조례의 이해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어 이를 “국가유공자 등”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며
- 장애인의 배우자도 장애인과 같이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장애인과 함께 생활하면서 장애인의 편의를 위해 사용하는 경우에만 장애인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을 할 수 있도록 하고
- 현행 시세감면조례에 종합토지세 감면세액 산정방식이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아 적용상 혼란이 있으므로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해 종합토지세 경감률 적용 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됨.

### 4. 질의·답변요지 : 생략

### 5. 토론요지 : 생략

### 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### 7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음

### 8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